

2020년도 제1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2020. 6. 23.(화요일)
- 방 법: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37건(안건번호 제2020-52762호~제2020-5286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금번 심의안건은 ★★★★★ 등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최신 영상저작물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에게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건으로, 복제물의 불법성,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본 심의대상 제2020-52762호~52861호(순번 1번~100번)는 ‘★★★★’ 등 웹하드 및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17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일본애니메이션 및 중국드라마 등 국외 최신 영상저작물들임. 이들 영상물들은 본국인 일본과 중국에서 최신 방영되었거나 방영 중인 저작물들로서 3개국 모두 베른협약의 동맹국들임을 고려할 때, 외국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베른협약에 따른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보호해줄 의무가 있음.

현재 국내의 온라인서비스 사이트들에 게시된 이들 영상물들은 복제 전송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이 영리목적의 온라인서비스에 불법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 저작권자가 얻어야 할 경제적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복제 전송의 중단과 삭제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이 타당할 것임.

- C 위원: 금번 심의안건들은 모두 방송콘텐츠의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사안들로서, 예컨대 (방송) 공정 드래곤즈 (2020), (방송) 사랑하는 소행성 (2020), (방송) 네코파라 (2020), (방송) 모여라! 시튼학원 (2020), (방송) 소말리와 숲의 신 (202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불법 복제 전송된 방송 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52762호~52861호{‘★★★★’ 사이트의 ‘(방송)공정드래곤즈(2020)’ 등 237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방송)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바가 적지 않아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20년 제11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23.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